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2012년 12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국장 오상균)

가. 제안이유

-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일부를 개정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변경

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토지가격에 0.01 곱한금액 ➡ 토지가격에 0.007 곱한금액

나) 노 점

- 토지가격에 0.02 곱한금액 ➡ 토지가격에 0.007 곱한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가.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적용요율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노점은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불법 노점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보다 가로판매대 등에 대한 점용료가 더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따른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6 호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일부를 개정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변경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토지가격에 0.01 곱한금액 ➡ 토지가격에 0.007 곱한금액
- 노 점
 - 토지가격에 0.02 곱한금액 ➡ 토지가격에 0.007 곱한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10. 11 ~ 10. 31)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의견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심사여부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 (점용료 산정기준) 제7호 내용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점용료를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을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07를 곱한 금액”으로,
노점의 점용료를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u>토지가격에 0.01 을 곱한 금액</u>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점용 면적 1㎡	1년	<u>토지가격에 0.007 을 곱한 금액</u>
	노점			<u>토지가격에 0.02 을 곱한 금액</u>				<u>토지가격에 0.007 을 곱한 금액</u>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 액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